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2016년 1월 15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12 부경빌딩201호 TEL:051-3363-114, FAX:051-3363-112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계간22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2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 서 만든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보낸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알면서도 이기주의에 팽배하여 남이 지켜주기 를 바란다면 우리는 또 식민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 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은 독도의 주입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 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 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가만두면 우리 땅인데 왜 지키려고 야단들이냐?

문: 독도 가만두면 우리 땅인데 왜 지키려고 하는가?

답: 일본은 독도를 뺏으려고 우리경찰을 철수하라. 시 설물을 철거하라,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도 일본 땅으 로 기제하고 자기들이 못 뺏으면 후세가 뺏으라고 학생 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일본 땅을 한국이 불법점거 하여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문: 일본이 그런다고 독도를 빼앗끼나?

답: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수역 절반을 빼앗긴 것 이다. 세계각국지도 대다수가 다케시마로 표시 되고 있 다. 지도상 빼앗긴 것이다.

문: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 아닌가?

답: 우리정부는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말 했지만 일 본은 우리 해양 연구원들이 해양조사 하는 것을 못 하게 하여 해양조사도 못 하고 돌아온 일이 두 번이나 있다. 일본은 공동수역 안에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주장 한다.

문: 그러면 독도를 일부 빼앗긴 것 같은데 맞나?

답: 바다도 독도다 넓은 바다가 절반 일본의 권리이니 40% 빼앗긴 것으로 본다. 지도상 일본해에 다케시마로 표시 되니 서류상 넘어간 것으로 보니 30%(등기와 같 은 권리가 없기에)넘어간 것으로 보고 종합 70% 넘어 간 것으로 본다.

문: 우리 정부가 잘 못 한 것 아닌가?

답: 맞다. 정부가 잘 못 하여 독도바다는 공동수역 섬의 명칭은 다케시마가 되었다.

문: 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답: 우리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잘 하도록 고치게 하 는 것을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문: 정부가 잘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나?

답: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면 정부는 정책을 고칠 것이 다. 여론을 무시하는 정부는 지지를 못 받아 선거에 패 배를 한다.

1.독도연구 2.독도주거자유. 3.독도관광지개발. 4.독도 지킨 의용수비대 잘 모실 것. 5.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 재협상을 요구한다.

호원금 주신 분

		_
황용섭	독도평화33대표	50.000원
임영길	대한민국무공수훈자	50.000원
김용태	서울송파구잠실2동	10.000원
김문성	대마도찾기국민연대	100.000원
김대수	통일천사부산상임대표(2회)	50.000원
이진우	한국글러벌피스재단부산	50.000원
이우종	경북예천군상리명5효자로	7.600원

[광복 70년 · 한일 수교 50년의 재인식] (25) 한일 해양레짐 50년 수정: 2015.08.03 22:23

1965년 한일 어업협정, 日 어업침략 막기 위한 이승만 라인 포기 대가로 9000만달러 차관 받아 어장 남획 막을 단속권도 후퇴 1998년 신어업협정. 영해 12-경제수역 200해리 골자유엔 협약 발 효 맞춰 어업권 재협상, 독도 둘러싸고 중간수역 설정

한일 양국을 가르는 바다가 거칠다. 지금도 어업,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조사, 동해 및 해저 지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은 한 치 양보 없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은 어장(漁場) 및 지하자원 확보라는 국익과 직결되는데다, 특히 역사 문제이기도 한독도 논란과 맞물리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 을 보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일 양국은국제적 해양 레짐에 순응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어업협정을 체 결하는 등 지난 50년간 그런대로 안정적인 해양 질서를 구축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평화선이 전관수역으로 대체된 경위



한일 간의 최초의 어업교 섭은 국교정상 화라는 큰 틀과 연동되어 1951 년 이후 14년간 의 진통 끝에 1965년에 타결 됐다. 이때 가 장 큰 쟁점이 된 것은 한국의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대체

할 전관수역(專管水域)의 설정 문제였다. 평화선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해양주권선을 말하는 데, 그 목적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 당 시 어업 능력이 월등했던 일본의 '어업 침략' 을 막기 위 한 것이었다. 한국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을 대 거 나포함으로써 연안 어장을 보호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일본은 어업협정을 통해 평화선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어업협정 체결 전까지 한 국은 평화선 수역에서 일본 어선 326척(선원 3,094명)을 나포했다. 요컨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의 어업 문 제는 한국이 평화선 선포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이익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가에 모아졌다.

결국 양측이 1%5년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관수역에만 그 외측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한다. 둘 째, 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사하는 '기국주 의'(旗國主義)를 채택한다. 결국 1965년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당시 국제적 관행이던 3해리 영해가 아니라 전 관수역 12해리와 공동규제수역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



수역이라는 우 회로를 통해 골 칫거리였던 평 화선을 실질적 으로 폐지한데 다, 기국주의를 관철함으로써 한국이 함부로 일본 어선을 나 포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를 두고 당시 한국



지난 2005년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 혐 의를 받고 있는 통영선적 장어잡이 통발어선(오른쪽에서 두번째)을 가운데 두고 일본 순시정(왼쪽 2척)과 우리 해경 경비정(오른쪽)이 울산 울주군 간절곶 동방 16마일 (28.8km) 지점에서 신풍호를 각각 밧줄로 묶고 대치하 고 있다. 한일 간의 어업 경쟁은 1998년 배타적 경제수 역(EEZ) 체제를 근간으로 한 신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더욱 치열해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에서는 평화선를 팔아먹었다는 비난과 더불어 일본 어 선의 남획을 막을 '단속' 조항의 훼손이 크게 부각되어 협정 반대 운동이 격렬히 전개됐다.

'진한분홍색'이 만들어낸 격세지감



다만 돌이켜 보건대 1965년 어업협정에서 보다 눈여겨봐 야 할 대목은 사실상 평화선 을 포기하는 '대가' 로 챙긴 9,000만달러 상 당의 어업차관 의 효과이다. 1965년 3월 김 동조 주일대사

가 "어떻게든 진한 분홍색을 칠해 달라"고 매달린 끝에 일본 성무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얻어낸 어업협력 및 선박수출차관으로 한국은 일본의 중고어선 등을 값싸 게 사들여 어선 능력의 대형화 및 현대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평화선을 없애면 한국 어업이 일본 어업에 종 속될 것이라는 어민들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국어업 은 오히려 일본의 연근해 어업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마침내 1977년 이후 동해 최대의 황금어장으 로 통하는 대화퇴(大和堆)와 홋카이도 해역에서 일본 어선보다 한국 어선이 더 많이 조업하는, 어업 능력의 역전이 이뤄졌다. (4면에 계속)

비영리 단체: 독도사수연합회

구독신청: TEL,051- 3363-114 FAX,051-3363-112 HP,010-6504-6510

도칙령 41호제정 115주년 기념식 및 독도사수결의대회

▶ 일시 : 2015년10월 25일(일요일)14시

▶ 장소 : 부산초량정발장군동상

최 🕍 독도사수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 후 📆 목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주관 독도사랑문학회, 독도생물다양성위원회, 독도우리회, 독도해병지킴이,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부산민족학교부설독도학당, 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부산연합, (사)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부산연합, 삼일동지회, (GPF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부산지회, 정의사회시민연대, 한국아리랑문학회, 대마도찾기국민연대, (사)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무공수혼자회부산광역시지부, (사)환경21연대부산본부, 곶감나라(상주), IMTV







대한제국칙령41호를 기념하는 시민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 독도시수 의지를 다진다.

대한제국칙령41호를 기념하는 시민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 태극기를 향해 경례







민족학교 김희로 이사장

자유총연맹 **류재호** 사무처장

자유총연맹 김종한 동구회장

자유총연맹 **류경호** 시무국장

자유총연맹 **남연우** 홍보부장

본회 최정헌 상임고문













본회 정종수 울산지회장

통일천사 김대수 상임대표

글러벌피스 **이진우** 부산회장 독도사랑문학회 **우명주** 회장

한국작가협회 안태봉 회장

감 사 장

2015.10.25

송운사 미타 大석굴 혜룡스님 : 투철한 사명과 국가관

안용복장군기념 **안준길** 이사

귀하는 평소 투첩한 사명감으로 상기 다음 수행해 나오면서 독도칙령115주 년 기념식 및 독도사수 결의대회에 즈 급하여 상기직에 열성적으로 활동하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를 기리고자 장에 새겨드립니다.

2015.10.25.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 백미경

독도우리회 장유정회장, 이원수독도연합총본부장, 박영춘독도해병지킴이본부장, 본회김영희부회장, 안맹조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이사님, 김상훈, 양정희 독도문학작가협회 고문님 부회장님, 그 외 여러분들 사진이 없어 올리지 못 함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자유충연맹부산지부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집자〉

녹노사수연합회 앞상서는 사람들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홍보대사	회 장			
최정헌 원장	김영구 교수	황성일 회장	장현섭	과현 옥 약사	송정숙	문병준 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 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박대희



















운영위원



한동락사장 **김선용**본부장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지방정부인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한 것이라고 독도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일본의 행동을 묵인 하는 것이 되기에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일본이 독도 날 행사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독도운동 하는 여러단체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정발장군동상에서 2월22일(월) 14시에 시작합니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7편

司 RYEO HAE INSTITUTE 羅海研新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그렇다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적법, 유효한 것 이 아닌가? 일본 정부의 강압으로, 고종은 1907년 7월 20일 강제로 퇴위되었고, 순종은 역시 일본 정부의 강 압으로 8월 27일 즉위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 문)는 고종과 순종 대신 내시에게 곤용포를 입혀서 허 위의 양위식을 거행 하게 하였다. 국제법상 이러한 강 압에 의한 허위의 황위 승계는 무효이다. 즉 고종의 강 제퇴위와 황태자 척의 황제(순종) 즉위는 무효다. 일제 (日帝)가 순종을 즉위시킨 것은 괴뢰국가 만주국(滿洲 國)을 세운 것과 똑같은 조치다. 이런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이다.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조약은 일본 왕(明 治天皇)과 대한제국 황제(純宗皇帝)간에 체결된 조약 인데, 순종(황태자 척)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기 때 문에 이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의 중대한 결함으로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은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이 아니다. 독 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로 「1951년 대일강화조 약」제2조에서 열거되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점령 상태가 종식되는 순간에 다른 별도의 정치적, 법적인 조치가 필요 없이 즉시 그리고 당연히 일본의 지배가 배제된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2) 독도 영유권 주장내용에 대한 한국 측 법적 추론의 재정비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리는 아직도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한 일간역사 인식의 심각한 괴리가 독도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 다는 학문적인 인식조차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

정을 파기하여 배타적정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공을 기려주십시오

독도수비의

모시고

塔고유공자로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

보장과 독도의 2 관광수입과 함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 국 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된 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을 완전 히 척결(剔抉)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한일간 역사 인식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과제

일본이 아직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정책의 미망(迷妄) 을 극복하지 못한 〈(용납될 수 없는 정책〉),〈(시대착오 적인 정책〉〉이라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여론을 확 립시키고, 일본 내부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 장을 계속하는 것이 일본의 국가적 위상을 올바로 정립 시키는 데에 조금도 보템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성립 시키려면 우선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괴리를 근원적으 로 해소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군사적 점령하에 국권을 상실하여 있다가 그 국권을 회복한지 65년이나 지난 지 금까지도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괴리를 근원적으로 해 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특 이한 인접국가의 잘못된 국수주의 탓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 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괴 리를 해소시키는 일은 과거시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만 으로는 성사될 수 없다. 일본 사람들의 "사무라이 기질" 이란 본래 불교적 자비정신에 입각한 평화주의, 인도주 의적 맥락을 가진 한국의 '화랑도 정신'이나 기독교 사 상에 근저를 둔 서구적인 '기사도 정신' 과는 전혀 판이 한 정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대결하고 있는 적 수의 전술적 약점을 간과하거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 지 않는 것을 '용서될 수 없는 무사(武士)의 죄악'으로 치부하는 '사무라이 정신' 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회 홈피에서 전부 볼수 있음〉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 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 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 도 잘 모이지 않는다. 독도를 뺏기면 안 되지 할 뿐 지 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독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1만 명중 한명 있을까? 독도 지키는 운 동에 별 도움을 못 준다. 할 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 에게 서명운동 하라면 못 한다. 회원가입해서 월 회비 1000원을 내라 해도 못한다. 독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독도지킴이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당신 은 독도 주인이다. 독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은 무얼 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다.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다시 생각 해 보십시오. o 요? x 요? 독도 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독도운동에 참여 하 세요.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편집자〉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 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旧 서명 \prec H $K \vdash$ 晋0 天0 10 12 13 14 15 16 17 18 19 5 9 ∞ 6 11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47766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ds5ean@naver.com HP:010-6504-6510 독도 이상훈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시마네현 지사, 日정부에

송고시간 | 2015/11/17 18:41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 요구… 일본 정부 신중한 반응

'독도 영유권 ICJ 단독제소' 촉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독도의 관할권을 주장해 온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지사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제소해달라고 17일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조구치 지사는 이날 일본 내 각부에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영토문제담 당상을 만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 정부가 ICJ 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망서를 전했다.

시마지리 담당상은 "무엇이 가능한지 (현과) 잘 상담해 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혼자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조구치 지사는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시마지리 담당상은 "정부로서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미조구치 젠베에 (溝口善兵衛) 일본 시마네 (島根) 현 지사 (연합뉴스자료사진)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7 18:41 송고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한다.

평온 할 때는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한. 일간 독도문제로 위급한(전쟁 등) 사항이 온다면 UN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하도 록 할 것이다. 양국이 서로 서로 양보 못 하면 평화적 방법이란 국제재판 뿐일 것이다. 독도연구와 독도마 을. 독도개발 등을 해야 유리 해 진다. (편집자)

〈1면계속〉

당연히 한일 간에 어업 마찰이 빈발했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 어선마저 가세하면서 일본 주 변수역의 일부 어장은 어장과 어구가 파괴되는 등 황 폐화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한국 연안에서 일본 어민 간의 과다 경쟁으로 어장이 말라붙은 것과 같은 상황 이 일본 주변수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 본이 어업협정에서 자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집했던 '기국주의'가 오히려 일본에게 단속권을 빼 앗는 족쇄가 됐음을 의미했다.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과거 평화선 철폐를 요구하며 공 해 자유의 원칙을 주장했던 일본이 1980년대 초반부터 어업협정의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 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협정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다. 유엔해양법의 재편과 한일 신어업협정 일본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94년 11월이다.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를 골 자로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것이다. 공해 자 유의 원칙에 따라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종래의 해양법이 바다를 나눠 각각의 연안국가가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게 한다는, 새로운 해양레짐으로 변경 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1996년 잇달아 이 협약에 비 준함으로써 어업협정 또한 EEZ 체제를 근간으로 재편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국내 어업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을 명목으로 타결 시한까지 제시하며 한국을 거세 게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은 기존 어업협정을 통해 누 려온 이익을 유지하면서, 특히 독도 영유권에는 하등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일본측의 공세에 대응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신어업협정은 19%년 3월 방콕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 일본 총리 간의 회담에서 영유권 문제와는 별 도로 EEZ 경계획정과 어업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함으 로써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되자 역시 독도에 대한 의견차가 부각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은 한국 어업의 일본 어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법을 개 정해 한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가 운데 1997년 3월 일본은 제4차 어업실무자회담에서 EEZ 경계획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업문제만을 잠 정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처음에는 반대 했으나 EEZ 경계획정을 명분으로 어업협정 체결마저 미룰 경우 어민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 1997년 8 월 울릉도와 오키(隱岐) 군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측 수석대표인 야 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 장은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어업 경계선으로 할 경우 독도가 한국측 수역에 포함되므로 수용할 수 없 다고 맞섰다. 이렇게 양측이 독도를 둘러싼 원칙론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1%5년 어업협정상의 '공 동규제수역선'을 이용하자는 일본측 제안과 함께, 독 도는 12해리의 영해만 갖고 양국 모두 EEZ를 주장하 지 않으면서 주변수역은 중간수역(일본명 잠정수역) 으로 하는 안이 급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대화퇴 어장을 한국에 내줬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 일 방적으로 1%5년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는 강수 를 두기도 했다. 결국 양국이 독도를 불문에 부치는 선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1998년 11월 새로운 어업협정이 탄생했다.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신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국 내에서는 '실패한 교섭' 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역시 비판의 초 점은 중간수역 내에 위치한 독도에 모아졌다. 독도 주 변의 12해리의 영해가 중간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신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즉, 어 업권 또한 주권적 영유권에서 연유하므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의 눈으로 보면 독도 주변 12해리는 '다케시마'의 영해인 12해리가 되는데, 신어업협정 어디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더 욱이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EEZ로 선포했는데도 불구 하고 한국이 EEZ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 로 삼은 것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 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 외 교부는 신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어업에 한정된 협정으 로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5년 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수역이 공해였음에도 불구하 고 독도의 법적, 실효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 던 것처럼 신어업협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각각 신어업협 정이 EEZ 경계획정이나 영토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사실 신어업협정 상의 독도 및 중간선은 앞서 체결된 중일 어업협정에서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주변수역의 예와 유사하게 처리됐다. 만약 당시 일본이 주변수역의 공 동관리가 센카쿠의 영유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면 중국과의 협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06년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 교섭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EEZ의 동쪽 한계선의 기점을 울릉 도에서 독도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한일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하면서 EEZ 교섭은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EEZ 경계 교섭은 어업 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독도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 문제는 사라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 해방 70년을 맞았는데도 한일간 바다의 '분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이동준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독도소식지 22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 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 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 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외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시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